

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

- 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(고시)’ 의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 중심 -



2021.3.10

발표자 :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장 김태성

발표순서

2021년 상반기 연구비 집행관리 포럼

I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

1. 제정취지
2. 법령체계
3. 하위규정 체계변화
4. 적용범위 및 경과조치

II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 내용

1. 규정체계
2. 기관별 책무
3.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

III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등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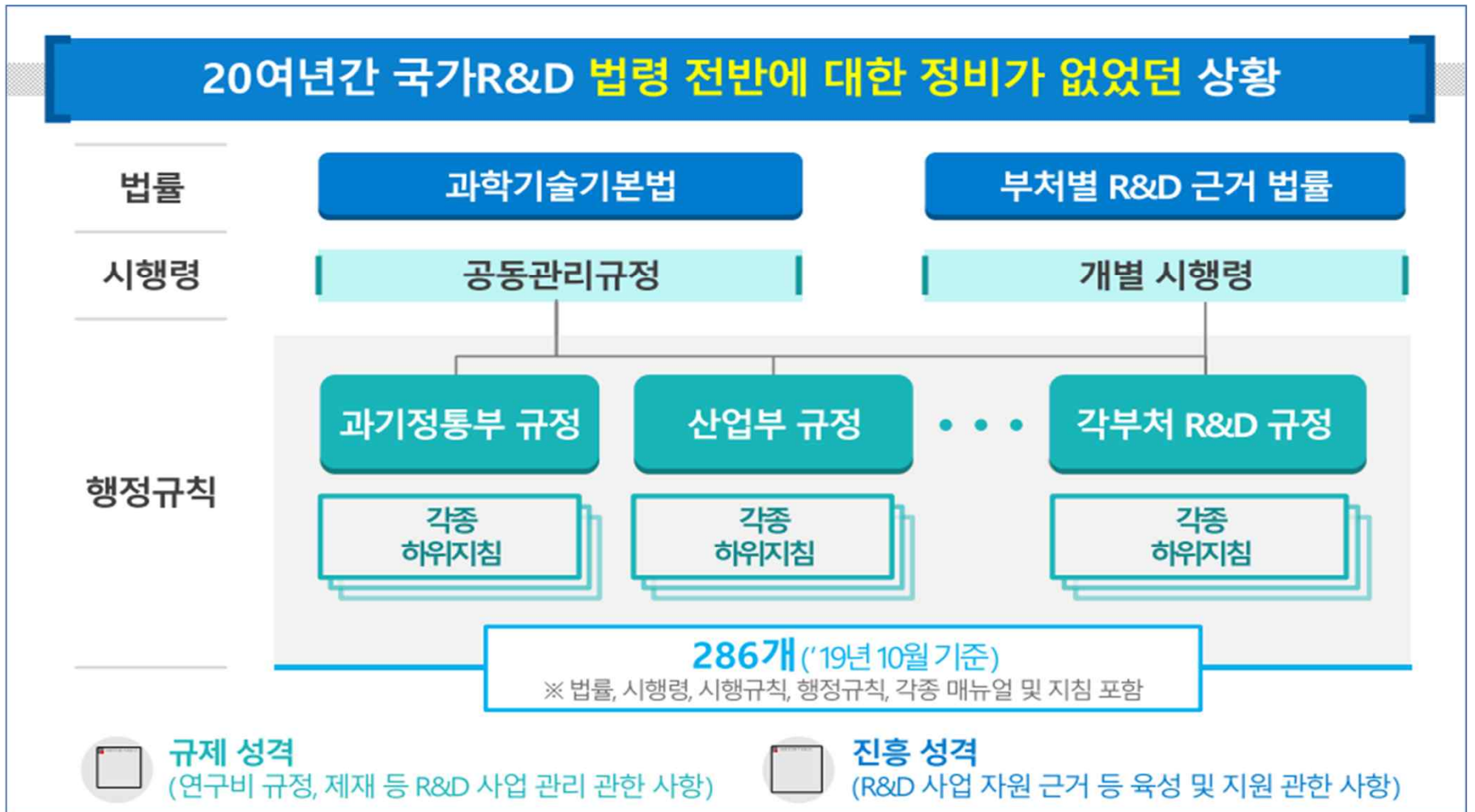
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특례(사용기준)

1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(2021.1.1시행)
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및 종전 규정 등을 단순 비교분석한 자료로써, 과기정통부 등 유권해석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부탁드립니다.

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취지

- ✓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흥과 관련 사항은 **개별 부처 소관 법률 적용**
- ✓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제사항은 **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로 통합 및 체계화**



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주요 법령 체계(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적용규정 중심)

| 종전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 | 과학기술기본법 | 학술진흥법 |
| 시행령 | 공동관리규정* | 학술진흥법 시행령 |
| 시행규칙 | 공동관리규정 규칙* |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|
| 행정규칙 |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 |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처리규정* |
| | |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* |

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|
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|
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|
|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|

* 기존 공동관리규정 및 규칙,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처리규정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은 2021.1.1자 폐지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규정 체계 변화

| 종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(고시) |
| 2. 학생인건비 계상기준(고시) |
| 3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(고시) |
| 4.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(고시) |
| 5.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(고시) |
| 6.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(고시) |
| 7. 연구노트지침(훈령) |
| 8.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 지정 고시(고시) |
| 9.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(고시) |
| 10.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) |
| <신설> |
| <신설> |
| <신설> |

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(유지 및 통합) 연구개발비 사용기준(고시) |
| 2. (유지)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(고시) |
| 3. (유지)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(고시) |
| 4. (유지) 연구노트지침(고시) |
| 5. (유지)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 지정(고시) |
| 6. (변경) 정보처리기준(고시) |
| 7. (유지)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) |
| 8. (신설)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(훈령) |
| 9. (신설)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운영규정(제정중) |
| 10. (신설) 연구지원기준(제정중) |

적용범위 및 경과조치

1. 국가연구개발사업

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**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**(법 제2조 제1호)

*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용어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100여개 달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나, 구체적인 정의 없었음

2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➤ **모든 국가 R&D과제에 적용**하는 것을 원칙(법 제3조 제1~5호에 해당될 경우 적용제외)

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**특별법적 지위 명시**(법 제4조)

법
제9조~제12조
및 제14조 및
제15조 사항을
다른 법률
적용가능대상

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(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)

☑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

☑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사업

* 시행령 제5조 : 학술진흥법 제7조, 고등교육법 제7조, 산학협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

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

- 일반회계
-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
-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
-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-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
- 우체국보험특별회계
- 우편사업특별회계
- 우체국예금특별회계
- 원자력기금
- 정보통신진흥기금
- 방송통신발전기금
- 과학기술진흥기금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* 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(정보공개)사전정보공표)

[단위 : 천원, %]

|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| 2020년 예산(A) | 2021년 예산(B) | 증감(C=B-A) | 증감율(C/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360-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| 0 | 960,000 | 960,000 | 순증 |
| 360-06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| 0 | 40,000 | 40,000 | 순증 |
| 1200 기초연구전환 | 1,591,914,000 | 1,886,873,000 | 294,959,000 | 18.5 |
| 1234 기초연구지원 | 1,499,748,000 | 1,790,698,000 | 290,950,000 | 19.4 |
| 301 개인기초연구(과학기술정보통신부)(R&D) | 1,220,838,000 | 1,476,968,000 | 256,130,000 | 21.0 |
| 300 연구개발출연금 | 1,220,838,000 | 1,476,968,000 | 256,130,000 | 21.0 |
| 360-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| 1,220,838,000 | 1,476,968,000 | 256,130,000 | 21.0 |
| 302 집단연구지원(R&D) | 278,910,000 | 313,730,000 | 34,820,000 | 12.5 |
| 360 연구개발출연금 | 278,910,000 | 313,730,000 | 34,820,000 | 12.5 |
| 360-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| 278,910,000 | 313,730,000 | 34,820,000 | 12.5 |
|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| 67,906,000 | 69,868,000 | 1,962,000 | 2.9 |
| 410 기초연구기반구축(R&D) | 11,482,000 | 12,243,000 | 761,000 | 6.6 |
| 360 연구개발출연금 | 11,482,000 | 12,243,000 | 761,000 | 6.6 |
| 360-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| 11,482,000 | 12,243,000 | 761,000 | 6.6 |

3. 경과조치

➤ '21.1.10이후부터 신규 또는 계속과제 모두 적용(법 부칙 제1조)

✓ (사례1) 1단계('18~'22년, 5년)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**2021.1.1이전에 종료된** 계속과제의 경우

| 사업연도 | '18년 | '19년 | '20년 (1.1~12.31) | '21년 (1.1~12.31) | '22년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사용기준 | 종전규정 (연차정산) | | | 혁신법 적용 (단계정산) | |
| 정산기준 | | | | | |
| 회수기준 | | | | | |

✓ (사례2) 1단계('18~'22년, 5년)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**2021.1.1이후에 종료된** 계속과제의 경우

| 사업연도 | '18년 | '19년 | '20년 (1.1~6.30) | '21('20.7.1~21.6.30) '20.7.1~'20.12.31 | '21.1.1~6.30 | '22년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용기준 | 종전규정 (연차정산) | | | 종전규정 | 혁신법 적용 | 혁신법 적용(단계정산) |
| 정산기준 | | | | | | |
| 회수기준 | | | | | | |
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(과기정통부, '21.2.26, p51)

2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 내용

- *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만 적용되는 ‘국제공동연구개발비’ 및 ‘연구개발부담비’는 제외
- *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용기준은 현재 마련중으로 설명자료에서 제외

1 규정체계

1. 조문구성

➤ 본칙 117개조, 부칙 5개조, 별표 8개, 별지 17개 서식

➤ 제1장 총칙(제1조~제4조)

➤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,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

☑ 제1절 사용용도(제5조~제17조)

☑ 제2절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(제18조~제33조)

☑ 제3절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(제33조~제44조) ☑ 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(제45조~제51조)

☑ 제5절 기타비영리기관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(제52조~제59조) ☑ 제6절 영리기관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(제60조~제69조)

☑ 제7절 사용절차 등(제70조~제72조)

➤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(제73조~제74조)

➤ 제4장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(제75조~제78조)

➤ 제5장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의 방법과 절차(제79조~제85조)

➤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(제86조~제99조)

➤ 제7장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특례(제100조~제111조)

➤ 제8장 간접비고시비율 산출(제112조~제115조)

➤ 제9장 보칙(제116조~제117조)

1. 중앙행정기관의 책무(제3조)

- ▶ 연구개발기관이 법, 영, 시행규칙,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 준수하도록 안내
- ▶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지 말 것

2. 연구개발기관의 책무(제4조)

- ▶ 연구개발기관이 법, 영, 시행규칙, 고시,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,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 사용
- ▶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,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지 말 것

3 연구개발비 공통계상 및 인정기준(사용기준 제21조 및 제22조)

공통계상기준

✓ (규정)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(제21조 제3항)

- 예시 : 연구개발비 적용규정에 없는 규정에 대한 계상기준 문의 쇄도

✓ (제한) 연구개발비 공통사항에 대한 계상 제한항목 명확(제21조 제4항)

- 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계상 제한
- 유형성 비용(주류 등), 동일한 비용에 대한 중복계상, 동일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중복 계상 제한
- 연구개발기관 내부 거래 제한 항목 명확히 제시

공통인정기준

✓ (사용) 연구개발기간(단계(최종)종료)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입증할 증명자료 구비

- 재난, 재해, 그 밖에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른 물품 및 서비스 계약 취소 및 변경 등 부대비용 포함

✓ (검수)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(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 포함) 구매 시,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

🎯 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종전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상 불가 | 부가가치세 등 환급 시에만 사용잔액 제외 등 판단 모호(신고의무만 존재) |
| 연구비 부당회수금지 |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위주 제한 |
| 내부 거래 |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거래 정의 불명확 |
| 검수 강화 | 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|
| 사용 방법 | 1)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 기관 자체 법인카드 사용근거 부재 2) 불가피한 경우 직접비의 1~2% 내 현금사용가능 |
| 연구비 이관 방법 |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(월할, 일할 등) |

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실제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 해당금액 계상불가(제21조 제4항) |
|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비 사용금액 전부 또는 일부 되돌려받는 행위 금지(사용용도 위반행위 해당) (제33조) |
|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거래 가능여부 명확한 근거 제시(제21조 제4항) |
|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(제22조제3항) |
| 1)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 법인카드 사용근거 마련 2) 현금사용 가능비율 삭제(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가능) |
| 기관유형별 직접비 및 간접비 이관방법 마련 (제36조, 제45조, 제54조, 제62조) |

① 사용용도(제6조)

- ☑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(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- ☑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(연구근접지원인력) 지급하는 인건비(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- ☑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참여하는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

② 사용기준(제39조, 48조, 57조, 65조)

- ☑ **(현금계상)** 참여연구자*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

* 교원(단,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외)은 제외

*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'사용기준 제65조제4항'인 경우에 한해 현금계상 가능

- ☑ **(계상율)**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율은 100%(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연은 130%) 이내 관리

* <관리단위> 정부출연기관 : 연 단위, 그 외 기관 : 월 단위, <시스템입력주기> 기관의 회계연도일까지 입력

* 총인건비계상율 = 인건비계상율+학생인건비계상율+학생인건비지급률+미지급인건비계상율

총전(참여율)

인건비(4대보험 본인부담금) +
4대보험기관부담금 + 퇴직급여충당금

변경(인건비계상율)

인건비(4대보험 본인부담금)
*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
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

인건비 계상 및 인정기준

🎯 사용기준(제39조, 48조, 57조, 65조)

- ✓ **(기관단위)** 비영리기관(대학, 정부출연기관, 기타기관)은 기관 별도 계정 거쳐 지급가능(과제별 인건비 계상을 관리 필요)
 - * 영리기관은 인건비 기관단위 관리 불가
- ✓ **(연구근접지원인력)**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 지급 불가
 - *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

🎯 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의변경 |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(참여율) | 인건비 계상비율 (인건비계상률) |
| 용어변경 |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| 연구근접지원인력 |
| 계상률 관리단위 | 별도없음 | (정부출연기관) 1년간의 급여 총액, (그 외 기관) 월급여 총액 |
| 계상률 입력주기 |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매월 입력 |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|

🎯 사용용도(제7조)

- ❖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(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- ❖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(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)

🎯 사용기준(제40조, 49조)

- ✓ **(계상율)**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율을 월 100% 이내 관리
 - *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 및 장학금,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, 겸임교원, 초빙교원 인건비, 기타 단기근로소득, 창업소득은 총인건비계상율 제외(제40조제4항)
- ✓ **(확약서)**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
 - * 시스템입력은 기관의 해당 회계연도일까지 입력
- ✓ **(계상기준)**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,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,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 등으로 대학 자율 결정
- ✓ **(지원규정)** 학생연구자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(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)
 - * 학업 및 연구보장, 처우개선,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을 포함

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기관 |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 한함 | 학생연구자를 보유한 모든 연구개발기관 |
| 학생인건비 계상을 관리 단위 | 월 단위 | 월, 학기, 학년 단위 |
| 인건비 계상률 제외 | 불명확 | 총인건비계상률에서 재정지원사업 등의 인건비 및 장학금,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, 창업소득 및 기타단기근로소득 제외 |
| 학생인건비 지급시기 | 월 단위 지급 | (통합관리기관)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일괄 지급가능 (연구개발기관계정만 가능) (비통합관리기관) 월 단위 지급 |
|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단위 | 월 단위 | 학기 또는 학년 단위 |
| 박사후연구원 인건비지급 | '20.12.31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|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(인건비 지급대상) |
|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변경 | 연구개발계획서에 학생인건비 총액 계상 (일반 및 통합관리금액 총액 기재) | 연구개발계획서에 일반 또는 통합관리금액 별도 기재 |

6 연구시설·장비비 계상 및 인정기준

① 사용용도(제8조)

-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, 연구시설장비 임차비,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, 연구인프라 조성비(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)

② 사용기준(제23조)

- ✓ **(계상)** 연구개발기관의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
- ✓ **(심의)** 3천만원 이상(부가세 등 포함) 연구장비 구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등 심의
 - * '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'(과기정통부 고시) 준수
- ✓ **(도입기한)** 각 상황별로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기한 준수
 - * (원칙) 최종(단계) 종료일 2개월전, (연구시설장비 구축과제) 최종(단계) 종료일(중앙행정기관 인정사항), (재난, 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) 최종(단계) 종료일 1개월 전(중앙행정기관 인정사항)

③ 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비도입기한 | 최종종료(단계) 2개월 전까지 | 1.(원칙)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전까지 2.(긴급상황) 최종(단계) 종료 1개월 전까지 3.(장비구축과제) 최종(단계) 종료일까지 *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사항 |

7 연구재료비 계상 및 인정기준

① 사용용도(제9조)

- 연구재료 구입비, 연구개발과제 관리비(관리시스템 등 운영비), 연구재료 제작비

① 사용기준(제24조)

- ✓ (계상) 연구개발기관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 및 시험설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

① 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재료비 구입기한 | 과제종료(연차)일까지 〈일부부처는 과제종료 2개월 이전까지 제한〉 | 최종(단계)종료일까지 |

① 사용용도(제10조)

- ❖ 지식재산창출활동비, 외부전문기술활용비(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 전문기술 비용포함), 회의비, 출장비, 소프트웨어활용비
- ❖ 연구실운영비, 연구인력지원비, 종합사업관리비, 그 밖의 비용

② 사용기준(제25조, 제41조, 제50조, 제58조, 제68조)

- ✓ **(지식재산창출활동비)**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은 사용 불가
- ✓ **(외부전문기술활용비)** 직접비의 40% 범위 내에서 집행 원칙(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사용 가능)
 - * 기술도입비, 전문가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
- ✓ **(회의비)**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불가(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가능)
 - * 10만원 초과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,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회의개요와 영수증 구비
- ✓ **(출장비)**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, 공무원이 아닌 자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
 - * 출장기관에서 식대 제공할 경우,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
 - *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에 출장계획서, 사후에 출장결과보고서 구비 필요(통합이지바로시스템 등록)
- ✓ **(S/W활용비)**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(긴급상황시 1개월) 전까지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(정부출연 기본사업은 종료일)
 - * S/W사용계약기간(계약기간이 최소단위 입증필요)이 연구과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상가능
 - *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S/W활용비를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관리 가능(비영리기관만 가능)
- ✓ **(연구인력지원비)** 종신학회비, 과제와 무관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 계상불가
- ✓ **(연구실운영비)**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

연구활동비 계상 및 인정기준

🌀 사용기준(제25조, 제41조, 제50조, 제58조, 제68조)

✓ **(전문가활용비)**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(정부출연기관만 해당) 또는 연구실(대학, 기타비영리기관) 소속된 자 계상불가 * 영리기관은 동일 기관 소속된 자에게 계상 불가

🌀 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| 〈신설〉 | 직접비의 40% 이내 사용가능 |
|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| 과제종료(연차) 일까지 | 1. (원칙) 최종(단계)종료 2개월 전까지 2. (긴급상황) 최종(단계) 종료 1개월 전까지 3. (기본사업) 최종(단계) 종료 전까지 |
|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도입기한 | 최종(단계)종료 2개월 전까지 (개인용 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) | 도입기한삭제 (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) |
|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(영리기관만 해당) | 〈신설〉 |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% 이내 계상 (해당 기술 도입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) |
|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| 연구활동비(사용용도 7호(회의비 등))가 직접비의 5%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 정산면제 | 〈삭제〉 |
| 연구근접지원인력 지원대상 | 연구활동비 지급불가(출장비 등) | 연구활동비 지급가능 (단, 연구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) |

① 사용용도(제11조)

-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

② 사용기준(제24조)

- ✓ **(계상)** 수정인건비(인건비(현물포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)+학생인건비+미지급인건비)의 **20% 이내 계상**
 - *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(원래계획) 계상금액보다 증액 불가
- ✓ **(입력)**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미지급인건비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
 - * 미지급인건비 = 연구과제 참여기간동안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과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X 미지급인건비계상률
- ✓ **(평가)**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자가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
- ✓ **(집행)**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**70% 초과 집행 제한**
- ✓ **(제한)**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% 초과 금액 및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의 20%p 초과할 경우 연구수당은 정산 시 회수

④ 사용용도(제12조)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

④ 사용기준(제27조)

- ✓ (계상) 직접비(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)의 40% 이내 계상
 - *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(원래계획) 계상금액보다 증액 불가
- ✓ (집행)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것을 연구비 사용 간주
- ✓ (정산)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 실시

🎯 사용용도(제15~17조)

- ❖ (인력지원비) 연구지원인력인건비,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
- ❖ (연구지원비) 기관공통비용, 사업단운영비,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, 연구실안전관리비, 연구보안관리비, 연구윤리활동비, 연구활동지원금
- ❖ (성과활용지원비) 과학문화활동비,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, 기술창업 출연 및 출자금

🎯 사용기준(제30~32조)

- ✓ (간접비비율적용) 연구개발과제 시작(단계)되는 시점의 해당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원칙
- ✓ (통합관리)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
*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
- ✓ (조정) 해당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연도 간접비 조정 가능
- ✓ (제한)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금지
- ✓ (구분관리) 대학(산학협력단 회계)은 연구과제의 간접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
- ✓ (집행)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사용 가능

🎯 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| 협약체결 시점(당해연도별,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) | 연구개발과제(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) 시작시점 |
| 간접비 증액가능여부 |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 불가 |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(사전승인사항) |
| 간접비 이관 |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시 간접비 증액 불가 |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(사전승인사항) |
|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| 1.(원칙) 5% 2.(예외)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기업은 10% 계상가능 | 10% |
| 간접비 기관통합관리 |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만 근거 존재 | 1.(비영리기관) 통합관리가능 2.(영리기관) 불가 |
| 사용제한 | 〈신설〉 |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불가 |

3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등

🎯 사용절차(제70조)

✓ **(연구비사용)**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

* 연구시설장비비(통합관리제외),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발의

✓ **(사용내역입력)**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

| 구분 | 일괄지급 연구과제 | 건별지급 연구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구비카드사용 | 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이체일로부터 5일 이내 | 연구비카드 사용일로부터 카드결제대금 이체 전까지 |
| 그 밖의 경우(계좌이체 등) | 연구비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| 연구비 사용 이전까지 |
|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|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| 해당없음 |
| 사용기준 제22조 제4항 (보고서, 연구수당 등) | 사용실적보고일까지 | 해당없음 |
|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(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제외) | 연구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| 해당없음 |

✓ **(자체재원사용)** 연구개시 후,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도 자체재원 사용가능(제72조)

✓ **(증명자료보관)** 전체(단계)종료된 후 5년간 보관(전자문서법에 따른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)

🎯 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| 모든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| 영리기관(공기업 제외)은 통합관리 불가 |
| 연구비 지급 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|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만 가능 | 모두 가능 (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기관 자체재원 사용 가능) |
| 증명자료 보관기한 | 연구기간 종료 후 5년(불명확) (해당연도 종료일 또는 최종종료일부터 5년 등) | 전체(단계) 종료일부터 5년 |
| 전자문서 보관대상 | 영수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적 보관 |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모두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가능 |
|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입력기한 | 1. (일괄) 집행 후 5일 이내 2. (건별)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 | 연구과제의 상황별 별도 규정 |
| 자체회계감사 생략 | 연구비 총액의 5천만원 이하 연구과제의 경우 자체회계감사 생략가능 | 〈삭제〉 |

🎯 승인사항(제73조)

- ✓ 연구개발과제(단계)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
- ✓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변경
- ✓ 연구개발과제(단계) 간접비 총액 증액
- ✓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
- ✓ 연구시설장비비 변경
 - *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(부가세 등 포함)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
 - *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(부가세 등 포함)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
 - *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(부가세 등 포함)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취소
 - *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
- ✓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% 이상 증액
- ✓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
- ✓ 해당 단계의 직접비(현물제외)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경우

 정산(제79~85조)

- ✓ (정의) 협약해약 또는 단계종료(최종) 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위
- ✓ (대상) 전체 연구개발비(정부지원, 기관부담, 그밖의재원 및 해당 연구과제 산입한 이자 포함)
- ✓ (정산기준) 연구개발비 부담기준, 사용용도, 계상기준,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, 사전승인사항, 이자의 사용용도 등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
- ✓ (제출서류) 자체회계감사의견서, 연구개발비 사용증명자료, 현물부담확인서,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
- ✓ (정산방법)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의 정보 및 증명자료를 활용하는 온라인 정산 원칙
 - *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
- ✓ (정산이의신청) 정산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이의신청가능(단,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)

 회수(제83조)

✓ (회수금액) 정부가 지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

- * 직접비 사용잔액(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제외),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 위반금액(현물부담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지원비율과 무관하게 회수)
- * 직접비 사용비율이 50% 이하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
- * 간접비 사용잔액 : 연구과제 협약해약인 경우, 영리기관(공기업제외)에 해당되는 경우

 주요 달라지는 사항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산주기 | 연차정산 | (원칙) 단계정산(단계구분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) - (연차종료) 사용내역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입력 - (단계(최종)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|
| 정산제출서류 | 사용실적보고서, 자체회계감사의견서, 현물부담확인서 |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(추가) |
| 정산대상 | 일부 과제 추출(5% 이상) | 모든 연구과제 정산 |
| 정산시점 | 〈신설〉 | 전체(단계)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시(착수) |
| 상시점검 | 〈신설〉 |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구기간 중 상시점검 가능 |
| 정산방법 |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| 통합이지바로시스템 활용 원칙 |
| 회수금액 면제 | 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을 경우 제외 | 〈삭제〉 |
| 회수금액 반납기한 | 별도없음 |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|
| 정부지분율, 직접비사용비율 등 산출기준 | 해당연도 | 전체(단계) 연구기간 단위 |

4.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용기준 특례

1 규정체계 및 계상기준

규정 체계(제116조)

- (사용용도) 시행령 별표2(과기 및 이공분야와 동일)
- (계상기준) 제18~제72조는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은 별표7,8을 우선 적용
 - * 별표7 및 별표8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기준 제1조~제1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

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(학술단체지원 제외)

- **(전용)** 직접비(인건비 제외) 총액의 20% 이내에서 직접비(인건비 제외)를 인건비로 전용가능
 - *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
- **(전용)**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제한적 전용가능(단, 전임교원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호 기관 취업에 한함)
 - * (연구책임자 경우) 중앙행정기관 승인으로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
 - * (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제외)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
- **(인건비)**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전부 계상(학생인건비는 해당없음)
- **(학생인건비)** 학사과정 월 100만원 이내, 석사과정 월 180만원 이내, 박사과정 월 250만원 이내
- **(도입기한)** 연구시설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연구종료 1개월 이내 도입
- **(연구수당)**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월 40만원 이내 계상(단, 과제특성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 달리 정할 수 있음)

1 규정체계 및 계상기준

학술단체지원사업

- **(학술대회지원)** 연구활동비로 기술도입비, 전문가활용비, 회의장임차료, 소프트웨어활용비, 기타 사용
 - * 소프트웨어활용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50% 이내에서 계상가능
- **(학술지지원)** 연구활동비로 기술도입비, 전문가활용비*, 연구윤리활동비*, 기타경비*를 사용가능
 - *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에 한하여 사용가능
 - * (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제외) :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

2 주요 달라지는 점

공통기준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구비지급방식 | 일괄지급 | 일괄 또는 건별지급 연구과제별로 다르게 지급 |
| 연구비시스템사용 | 별도사용하지 않음 |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사용(법 제13조) |
| 연구기간 외 사용 | 별도없음(과기분야 규정 준용) | 연구최종(단계)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일부 사유(보고서 발간비용 등)에 한해 사용가능 |
| 현금사용가능حد도 | 당초 직접비의 2% 이내 | 〈삭제〉 |
| 항목전용제한 | 당초 직접비(인건비(전문인건비+학생인건비) 제외)의 20% 범위 이내 인건비로 전용가능 | 직접비(인건비 제외(학생인건비 포함)의 20% 범위 이내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 |
| |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간 전용가능 |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불가 |
| | 학술활동수당 증액 가능 | 연구수당 증액 불가 (단,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3호에 해당할 경우 가능) |
| | 간접비 증액불가 | 간접비 증액가능(사전승인사항) |

2 주요 달라지는 점

인건비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| 계상여부 불명확 | 계상가능 |
|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인건비 | 학생인건비 계상가능 | 학생인건비 계상불가(인건비 계상가능) |
| 연구기간 외 사용 | 연구기간 종료 후 1년간 사용가능 |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불가 (출연연 및 특정연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적용) |
| 다른 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 인건비 | 학생인건비 계상가능 | 학생인건비 계상불가(인건비 계상가능) |

연구시설 · 장비비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구시설장비도입 | 구입금액과 무관하게 계상가능 | 건당 3천만원 이상(부가세 등 포함)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 및 ZEUS시스템 등록 |

2 주요 달라지는 점

🎯 연구활동비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회의비집행 |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가능 |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불가 |
| 학회참가비 |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불가 | 계상가능 |
| 논문게재료 |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가능 |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불가 |
| 연구환경유지비 | 계상불가 | 계상가능(자체규정 마련 필요) |
|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 | 계상불가 | 계상가능(자체규정 마련 필요) |
|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|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 시 집행불가 | 계상가능 |
| 외부전문기술활용비 | 집행한도 없음 | 직접비의 40% 이내 사용가능 |
| 소프트웨어활용비 |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 |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입증 시, 연구기간 초과되어도 집행가능 |
| 국외출장 |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| 국외출장비 지급시,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|

2 주요 달라지는 점

🎯 연구수당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급대상자 |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가능 | 참여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 지급가능 (단,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계상불가) |
| 계상한도 | 1인당 월 40만원 이내 | 1인당 월 40만원 이내 (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) |
| 연구수당 회수 | 〈신설〉 | 1.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% 초과금액 회수 2.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%p초과한 경우 회수 |

🎯 간접비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간접비 회수 | 〈신설〉 | 직접비 집행비율이 50% 이하일 경우,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회수 |

과기(이공)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주요 차이점(혁신법 중심)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항목 전용제한 |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없음 |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있음 |
|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|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계상가능 | 계상불가 |
|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| 통합관리 적용 | 통합관리 불가 |
| 인건비 지급단가 |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적용 |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 (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적용) |
| 인건비 계상 | 총인건비계상을 범위내에서 여러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| 하나의 학술지원사업에 모든 인건비를 계상 (일부 또는 전부 다른 재원으로 계상불가) |
|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| 학사과정: 월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: 월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: 월 250만원 이상 | 학사과정: 월 100만원 이내 석사과정: 월 180만원 이내 박사과정: 월 250만원 이내 |
|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| (원칙) 전체(단계) 종료 2개월 이내 | (원칙) 전체(단계) 종료 1개월 이내 |
| 연구수당 계상기준 | 수정인건비의 20% 이내 | 1인당 월 40만원 이내 |
| 연구수당 지급대상자 |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도 연구수당 지급가능 |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는 연구수당 지급불가 |



2021년도

상반기 연구비 집행관리 포럼

감사합니다.